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7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조승환 · 곽규택 · 김은혜
김미애 · 김성원 · 김태호
정동만 · 서지영 · 유용원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업”을 “공업(조선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안 및 간척, 육운”을 “육운”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해양환경, 해양조사”를 “국제물류, 조선, 해양환경, 해안 및 간척, 해양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해양수산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양수산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조직법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생략)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u>국토교통부</u> 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② ----- ----- ----- ----- ----- ----- ----- <u>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 · 무역 · <u>공업</u>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 ----- <u>공업</u> ----- <u>업(조선은 제외한다)</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제43조(국토교통부) ① ----- ----- -----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u>해안 및 간척</u>, <u>육운·철도</u>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u>해양환경</u>, <u>해양조사</u>,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략)	----- ---<u>육운</u>-----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해양수산부) ① ----- ----- ----- ----<u>국제물류</u>, <u>조선</u>, <u>해양환경</u>, <u>해안 및 간척</u>, <u>해양조사</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